

감 사 규 정

(제정 1991. 6.19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 유지·경영하는 각급 학교 및 법인의 경영상태와 제반 사무처리 상황을 조사·감독하여 과오, 해태 등을 미연에 방지함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의 개선·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, 전주비전대학, 전주영생고등학교,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및 법인에 적용된다.

제3조(감사의 구분) 감사의 구분은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.

- ① 정기감사는 연 1회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② 특별감사는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.

제4조(감사반 편성)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.

- ② 감사반의 책임자는 감사(공인회계사)로 보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반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사무국 직원으로 편성하되,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특정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서면감사) 감사는 감사 사항의 성질,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케 하여 서면감사를 할 수 있다.

제6조(감사 통보)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, 일정 등을 피감사 학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감사자료 제출 등) 감사와 감사반원(이하 “감사인”이라 한다)은 감사상 필요한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① 제장부,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
- ②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·답변 요구
- ③ 경위서, 확인서의 제출
- ④ 창고, 금고, 문부·물품 등의 봉인
- ⑤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

제8조(감사인의 준수사항) 감사 및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공개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
- ③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규정과 법규에 따라 사실과 근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기간중 피감사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피감사기관의 협조) 피감사 기관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수행상 성의를 다하여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1-0-2-2 감사규정

제10조(감사처분의 대상) 감사 결과 처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
- ②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지도와 감독 책임을 다하였더라면 지적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감독자
- ③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

제11조(감사처분의 종류) 감사처분 종류는 신분상의 조치, 행정상의 조치 및 재정상의 조치로 구분한다.

- ① 신분상 처분은 해임(파면 포함), 정직, 감봉,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경고, 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.
- ② 행정상 처분은 경고, 시정, 주의,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.
- ③ 재정상 처분은 변상, 추징, 회수, 보전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.

제12조(처분의 기분)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과실의 경중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.

- ②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및 직무수행을 다하지 못하여 교권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 등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감사결과 보고) ① 감사와 감사인은 감사 실시 후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전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결과 양부(良否)에 따라 조치 구분에 의한 조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징계 요청) 감사와 감사인은 교원징계규정 및 직원징계규정 제8조(징계의 사유)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교직원에게 대하여 이사장에게 징계요청 할 수 있다.

제15조(감사결과 조치 요구) 이사장은 제11조 2항 및 3항과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의견은 위반사실, 적출내용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조치 요구를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조치결과 통보)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이사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이사장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의 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재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사장의 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중인 감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